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93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 의 자 : 김영진 · 이정현 · 이해식
서삼석 · 김교홍 · 김태년
윤후덕 · 조승래 · 허영
박지원 · 최혁진 · 안태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의 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통계의 국제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제고 하기 위해 매년 영문 간행물 및 청소년 대상 교육 간행물 발간 등의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획간행물은 주제 선정과 대상별 표현 방식이 반복되는 등 기존 간행물의 단순 보완·업데이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정책 홍보 효과와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측면에서 질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아울러 매년 발간 대상과 주제를 선정하는 내부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선정 기준·회의 결과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성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에 대한 연간 종합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발간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법」에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획간행물 발간 사업의 체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의 발간·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매년 통계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회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제출한 종합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8조의2(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의 발간·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매년 통계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회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제출한 종합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u> <u>③ 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